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0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10.

발 의 의 원 : 최상국 의원 등 8인

1. 수정이유

-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가축사육제한 지정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중
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를 당초 500m에서 800m로 확대
- 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원안과 같음.

붙임 수정안 1부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 표】

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

□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(조례안과 동일)

○ (조례안과 동일)

○ (조례안과 동일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-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및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경계로부터

- ▶ (당초) “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” 을

- ▶ (변경) “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” 로 한다.

-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·생산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

- ▶ (당초) “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” 을

- ▶ (변경) “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” 로 한다.

- (조례안과 동일)

-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

- ▶ (당초) “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” 을

- ▶ (변경) “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메추리는 1,000m 이내)” 로 한다.

- (조례안과 동일)

- (조례안과 동일)

- (조례안과 동일)

조례(안)과 수정(안)의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【별 표】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☐ <u>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</u> ○ <삭 제> ○ <삭 제>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 지역 및 <u>주거·상업·공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매추리는 1,000m 이내)</u>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·생산 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<u>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매추리는 1,000m 이내)</u> (현행과 같음) ·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(<u>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매추리는 1,000m 이내</u>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·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소하천 구역 ☐ <삭 제> ☐ <삭 제>	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조례안과 동일 1. ~ 5. (조례안과 동일) 【별 표】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☐ (조례안과 동일) ○ (조례안과 동일) ○ (조례안과 동일)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 지역 및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경계로부터 <u>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매추리는 1,000m 이내)</u> ·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자연·생산 녹지)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<u>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매추리는 1,000m 이내)</u> (조례안과 동일) ·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<u>800m 이내의 지역(다만, 돼지·개·닭·오리·매추리는 1,000m 이내)</u> (조례안과 동일) (조례안과 동일) · (조례안과 동일) ☐ (조례안과 동일) ☐ (조례안과 동일)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“가축사육제한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

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1. 도시지역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 :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 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 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 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
2. 관리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보전관리지역 : 자연환경 보호, 산림 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나. 생산관리지역 : 농업·임업·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

다. 계획관리지역 :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·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
3. 농림지역

4. 자연환경보전지역